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2467)

2025. 2. 2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467

I.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5년 02월 03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6일

2. 제안이유

- 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시설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 5. 31.일자로 협약 만료됨 ('20.6.1.~' 25. 5. 31.)
- 나.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육 및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체육 및 재활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 필요
- 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장애인 생활체육 및 복지사업, 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사업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유지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나. 위탁범위 : 위탁사무 운영 빛 부동산·장비·물품 관리 일체

다. 위탁기간 : '25. 6. 1. ~ '30. 5. 31.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71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95.4.18. ~ '25.5.31. (8회)	'12.6.1. ~ ~ '25.5.31. (3회)	1,184('25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
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 별관(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24.11월 착공, '26.12월 준공 예정) 중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협약기간이 「25년 5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개요

- 사무명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장애인 생활체육 및 복지사업, 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사업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유지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범위 : 위탁사무 운영 및 부동산·장비·물품 관리 일체 (시설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5. 6. 1. ~ '30. 5. 31.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71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95.4.18.~ '25.5.31. (8회)	'12.6.1.~ '25.5.31. (3회)	1,184('25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²⁾에 의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서 75점 미만시 해당 수탁기관과는 재계약이 배제됨.
- 본 사무는 위탁 기간 동안의 지도·감독 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2024년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점수에서 75점 미만을 획득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현황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유지의 차원을 넘어 제한된 활동으로 야기되는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³⁾은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종목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69.6%), 웨이트 트레이닝(7%), 자전거(5.1%) 순으로 나타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는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주일에 2회이상, 1회에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의미함.

- 또한 동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야외 등산로와 공원이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장애인은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권 주변에서 앞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 장애인 우대시설’ (29.9%), ‘공공체육시설-통합시설’ (28.8%), ‘장애인복지시설’ (16.7%)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에는 현재 총 7개의 장애인체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장애인 이용자가 매년 평균 약 20만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서울시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이용자	1,891,690명	569,392명	1,033,775명	1,537,321명	1,886,375명
장애인 이용자	725,258명	251,492명	511,777명	726,482명	879,879명
장애인 이용률	38.3%	44.2%	49.5%	47.3%	46.6%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⁴⁾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며, 해당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4)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해당 사무는 서울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체육사업 등 생활체육 사업 및 복지사업 뿐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체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체육사업의 경우 전문 장애인 체육지도사에 의해 교육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이용 대상인 장애에 대한 특성 및 전문지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형태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이하 “센터”)는 서울시내 위치한 7개의 장애인체육시설 중 유일한 시립시설로, 1995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현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12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법	비고
최초위탁 (기부채납)	5년('95.4.18.~'00.4.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00.4.18.~'03.4.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계약	
3차 위탁	3년('03.4.18.~'06.4.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계약	
4차 위탁	3년('06.4.18.~'09.4.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계약	
5차 위탁	3년('09.4.18.~'12.4.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계약	
	기간연장 ('12.4.18.~'12.5.31.)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기간연장	시의회 동의 후 재위탁 추진을 위한 기간 연장
6차 위탁	3년('12.6.1.~'15.5.3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위탁	
7차 위탁	5년('15.6.1.~'20.5.3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계약	
8차 위탁	5년('20.6.1.~'25.5.3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위탁	

- 2024년 9월말 기준 센터의 주요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3년 센터 주요사업 실적 ('24년 9월말 기준)

구 분	계 획	실 행	대 비
	연인원(명)	연인원(명)	연인원(%)
합 계	424,154	344,809	81.3
장애인 건강체육사업	116,864	87,757	75.1
장애인 체력인증사업	33,140	23,419	70.7
평생체육사업	253,732	214,812	84.7
아이누리사업	20,418	18,821	92.2

- 센터의 일평균 이용자수는 1,582명이며 장애인 이용자는 '24년 9월 기준 123,060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의 35.7%로 나타남.
- '24년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70.3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증빙자료의 미제출, 채용심사위원의 구성, 계약절차 미준수 등 협약사항 위반이 6건 발생한 것이 주된 감점 요인으로 나타남.

라. 기타사항

- 현재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활용해 별관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
- 반다비체육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1개 수탁법인이 곰두리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를 총괄운영하는 방향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센터의 민간위탁금 규모는 ‘25년 기준 1,184,798천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별관의 운영이 시작될 경우 약 591,840천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체육의 가치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재활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지역 사회에 의미있는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음.⁵⁾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무는 서울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신체적 기능회복 및 재활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 기관은 장애인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전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협약사항 미준수로 재계약에서 배제되는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5)이규진. (202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중장년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2(1), 143-152.

-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재위탁 공모과정에서 적절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감독을 강화해 해당 사무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하겠음.